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1] <개정 2014.2.17>

등록에 관한 기록의 보존에 관한 사항(제4조 관련)

1. 등록기관의 장은 장기등기증자, 장기등기증희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그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.
 가. 장기등기증자 등록의 경우
  1) 살아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자로서 등록을 한 경우: 적출 후 10년
  2) 뇌사자로서 등록을 한 경우: 적출 후 15년
 나.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의 경우
  1) 장기등의 적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: 사망 후 1년
  2) 장기등의 적출이 이루어진 경우
   가) 사망한 자로서 장기등기증자 등록을 한 경우: 적출 후 10년
   나) 뇌사자로서 장기등기증자 등록을 한 경우: 적출 후 15년
 다. 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의 경우
  1) 장기등의 이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: 사망 후 1년
  2) 장기등의 이식이 이루어진 경우: 이식 후 10년
2. 제1호에 따른 기록은 마이크로필름, 광디스크, 그 밖의 전자적 보존매체에 원본대로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.
3.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기록을 보존할 때에는 필름 촬영 책임자가 필름의 표지에 촬영 일시와 본인의 성명을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.
4.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수록이 완료된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 중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는 필요에 따라 파기할 수 있다.